

26.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2000-9호 2000. 1. 17

개 정 이 유

표준설계도서의 인정범위가 없어 대형 건축물도 표준설계도서로 인정하므로 인하여 지형 및 지반의 변화에 따른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표준설계도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고, 건축물의 미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부위별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에 반영토록 권장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미관증진 수단으로 건축물의 부위별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이를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나. 표준설계도서의 인정규모 또는 용도는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만, 축사는 연면적 1,700제곱미터만, 농업용저장고는 연면적 1,000제곱미터만, 학교는 6학급 이하,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,000제곱미터 미만인 파출소, 우체국, 읍·면·동사무소, 기타용도는 330제곱미터 미만 및 건축물의 부위별 표준설계도서로 제한하여 구조안전 등을 도모함.

다. 표준설계도서는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작성자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, 국방부장관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,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장은 설계자문위원회 및 시·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 함.

주택회보